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
------	-----

2011. 7. .  
제정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1.6.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 (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

가. 제안이유

서울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관련 지원기구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산학연 협력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문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산학연 협력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으로 변경함(안 제24조의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명칭을 '시 발전계획'으로 변경함(안 제2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 발전계획' 수립 시 '시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 바, 관련내용을 반영함(안 제5조).
- 직제변경 및 사업 위탁운영기관 변경에 따라 산학연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시 산업경제기획관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로 변경함(안 제20조의2).

- 시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명칭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산업국장'을 삭제함(안 제14조, 제22조) .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가. 조례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역간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 특화발전 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위탁운영 기관을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안 제2조, 제5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은 당초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2009년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시·도를 뛰어 넘는 지역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였음.
- 법 개정으로, 각종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제2조의 '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맞춰 서울시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 또한, 기존의 '시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시에 '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 규정(제6조 및 제28조)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 산학연 협력사업 위탁기관의 변경(안 제24조의2)

- 서울시(이하 “시”)는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구 통합계획'(2010.9)에 따라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SBA”)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을 통합하고자 함.

〈표〉 현행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구 현황

구 분	산학연지원센터('06.4)	지식재산센터('09.4)	BS산업지원센터('09.9)
위 탁기관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 치	서초구 서초동	마포구 상암동	강남구 대치동
조 직	6팀 24명	1팀 12명	1팀 6명
예 산	66,252백만원	1,856백만원	1,677백만원
주 요 기 능	< 산학연협력사업 지원 > · 산학연 육성정책 수립 · 연구개발 발굴/지원/평가 ·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 · 산학연사업 성과관리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특허 스타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 거래 지원	<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지원 > · 허브포털 구축 운영 · BS와 제조업 동반성장 · 컨설팅, 시장조사, 엔지니어링, 광고산업 집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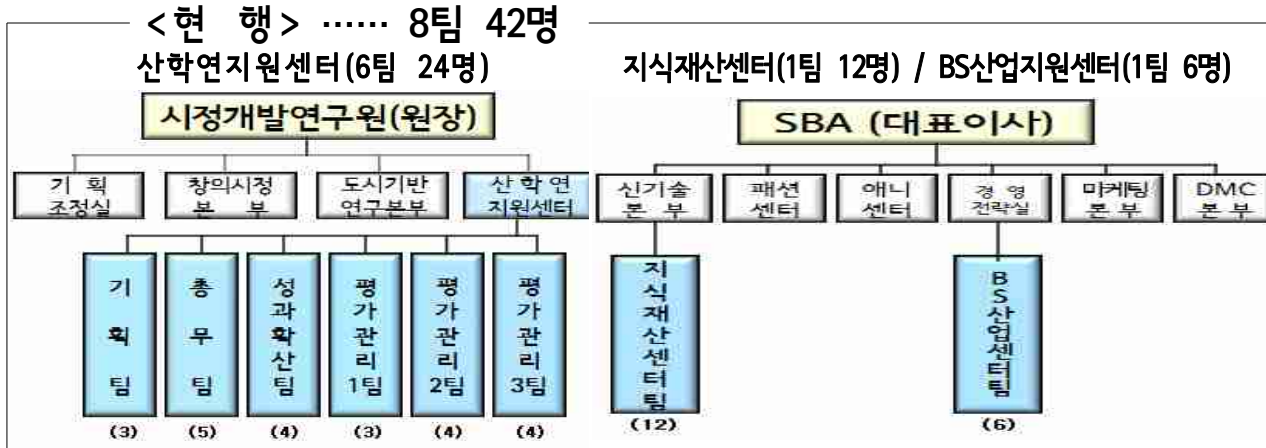
※ 자료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 이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기관 분산에 따른 중복투자 발생 및 운영인력의 중복 등 비효율을 제고하고, “기술화·상품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통합 계획에 따르면 산학연지원센터(시정연)와 지식재산센터 및 BS산업지원센터(SBA)를 하나로 통합해 지식서비스산업지원본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를 SBA에 두고자 함.
- 이에 따라 현재 2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3센터 8개팀을 1본부 6팀 체제로 통합하고, 42명이던 직원 수를 38명으로 조정할 계획임.

〈그림〉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구 통합방안

**조직구성**

: 3센터(8개팀) ⇒ 1본부(6개팀) 체제로 통합



※ 자료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 시는 지원기구 통합을 통해 One-Roof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표〉 통합전·후 예산 비교

센터명	통합 전	통합 후	증 감
계	52,206	50,612	△ 1,594
산학연지원센터	48,573	47,759	△ 814
지식재산센터	1,956	1,287	△ 669
BS산업지원센터	1,677	1,566	△ 111

- 최근 기관간 협력과 통합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이념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적용되어 이른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기관간 통합이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조직 재설계 경향이 일어나고 있음.
- 지난 2009년 5월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과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기존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기도 하였음.
- 경기도의 경우도 2010년 5월 과학기술활동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부설기관 이던 '경기과학기술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를 통합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해 산학협력 연구 지원, 산학연간 네트워킹, 공동 활용 장비 제공, 과학기술 정책연구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가 각종 산학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의 통합을 구상하고, 특히 각종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 위탁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 하는 조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양 기관의 물리적 통합에 앞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산학연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통합조직이 서울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적 조직으로서 그 동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실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을 위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으로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새로운 기구의 설립 타당성과 비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정을 거쳤음<sup>1)</sup>.

#### 라. 기타 사항

- 안 제14조 등에서는 시 직제변경 및 위탁운영기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산학연정책위원회', '기업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조례에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성도 되지 않아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그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9), 「경기과학기술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안」

#### 마. 종합의견

- 산학연 협력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지원과 사업화에 대한 전문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SBA를 위탁기관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기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기관 통합 수준에서 벗어나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의 주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의 미래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그 구성 및 활동실적이 전무하고, 대상이 될 기업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함.

##### 나. 수정의 주요 내용

- 활동실적이 없어 그 규정의 실익이 없는 '기업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함 (안 제22조).

####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2
----------	--------

제안년월일 : 2011년 7월 8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그 구성 및 활동실적이 전무하고, 대상이 될 기업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활동실적이 없어 그 규정의 실익이 없는 '기업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함  
(안 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를 삭제한다.

안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를 각각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전략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하는 <u>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 발전계획”이라 한다)</u>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p> <p>2. ~ 11.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u>제7조의</u> ----- ----- <u>시 발전계획</u> <u>(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u>----- ----- ----- ----- ----- ----- ----- ----- -----.</p> <p>2. ~ 11. (현행과 같음)</p>	<p>제2조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① <u>시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u></p> <p>1. ~ 3.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산업의 선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지역혁신협의회의</u></p>	<p>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u>시장은 발전계획</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제5조 (개정안과 같음)</p>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생략)
- ②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2.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3. 당연직 위원 : 경제진흥관, 도시계획국장
- 4. 위촉직 위원 : 의회 의원, 도시계획·산업정책·그 밖에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③ ~ ⑧ (생략)

제20조의2(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 1. ~ 6.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당연직위원 : 시 경제진흥관 및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장
- 2. 위촉직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 : 산업경제기획관, -----
- 4. (현행과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시 산업경제기획관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 2. (현행과 같음)

제14조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의2 (개정안과 같음)

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자

제22조 (기업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  
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2. 부위원장 : 경제진흥관
- 3. 당연직 위원 : 감사관,  
산업국장 및 해당민원  
관계국장

4. 위촉직 위원 : 도시계  
획·건축·세무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  
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자

④ ~ ⑤ (생략)

제23조(포상금) (생략)

제24조(자금지원의 관리) (생략)

제24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협력사업의 기획·평  
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시정  
개발연구원에 위탁할 수

제22조 (기업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 1. -----
- 2. ---- : 산업경제기획관
- 3. ----- : 감사관  
및 해당민원 관계국장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제23조(포상금) (현행과 같음)

제24조(자금지원의 관리) (현행  
과 같음)

제24조의2(사무의 위탁)

① -----  
-----  
-----  
-----  
-----  
-----  
-----  
-----  
-----  
서울산업통상진  
흥원-----

제22조 (삭 제)

제22조(포상금)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자금지원의 관리) (개정  
안과 같음)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개  
정안과 같음)

있다.

② ~ ④ (생략)

제25조(규칙)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규칙) (현행과 같음)

제24조(규칙)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로, “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 발전계획”이라 한다)”를 “시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예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제14조제2항제3호의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시 경제진흥관 및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장”을 “시 산업경제기획관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를 각각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전략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하는 <u>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 발전계획”이라 한다)</u>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p> <p>2. ~ 11.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제7조의 ----- <u>시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u>-----</p> <p>2. ~ 11. (현행과 같음)</p>
<p>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① <u>시장은 지역혁신발전계획</u>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p> <p>1. ~ 3.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산업의 선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지역혁신협의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u>시장은 발전계획</u>-----</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 (생략)</p> <p>②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위원장 : 행정1부시장</p>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 2.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3. 당연직 위원 : 경제진흥관, 도시계획국장
  - 4. 위촉직 위원 : 의회 의원, 도시계획·산업정책·그 밖에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③ ~ ⑧ (생략)

제20조의2(산학연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생략)
- 1. ~ 6.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당연직위원 : 시 경제진흥관 및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장
- 2. 위촉직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22조 (기업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② (생략)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2. 부위원장 : 경제진흥관
  - 3. 당연직 위원 : 감사관, 산업국장 및 해당민원 관계국장
  - 4. 위촉직 위원 : 도시계획·건축·세무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④ ~ ⑤ (생략)

- 2. (현행과 같음)
- 3. ----- : 산업경제기획관, -----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산학연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시 산업경제기획관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 2. (현행과 같음)

제22조 (삭제)

제23조(포상금) (생략)

제24조(자금지원의 관리) (생략)

제24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5조(규칙) (생략)

제22조(포상금) (현행과 같음)

제23조(자금지원의 관리)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① -----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홍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규칙) (현행과 같음)